

검 토 보 고 서

| 안 건 명 | 부서명 | 페이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1.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| 생활체육과 | 1 |

(2013. 6. 24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3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6월 7일

나. 의안번호 : 13-37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동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·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90. 3. 8 제정하였으나,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『국민체육진흥법』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“체육진흥협의회”를 둔다는 「강제조항」이 “둘 수 있다”는 「임의조항」으로 개정되었고, 우리 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활동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.

[검토의견]

동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1항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규정이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본 조례를 폐지하거나 미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, 현실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자치구는 전무하며 서울특별시조차 본 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활동으로 유명무실한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은 물론 우리 구 [조례규칙심의회]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